



# 검사대상명부(RTP) 선수 안내사항

2021. 3. 2.(화) / 도핑검사부

귀하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검사대상명부(RTP) 선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도핑관리의 목적으로 귀하의 소재지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에 명시된 RTP 선수의 의무사항과 미준수에 대한 결과조치를 반드시 읽고 숙지하고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사항

- RTP 선수는 다음 분기 동안 매 일자 별로(주말 포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별 소재지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① 선수의 최신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 ② 일자별(주말 포함) 야간거주지의 전체 주소(예: 자택, 호텔, 임시 숙소 등 1박을 머무르는 거주지)
    - ※ 반드시 건물명, 동·호수를 포함한 세부주소 기입
  - ③ 일자별(주말 포함) 05:00~23:00 중 검사가 가능한 하나의 특정 장소와 60분 단위시간
    - ※ 시간은 반드시 24시간제로 기입(예: 오후 9시 → 21:00)
  - ④ 해당 분기(주말 포함) 동안의 정규활동 정보
    - ※ 훈련, 근무, 수업 또는 기타 정규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이름, 주소 및 시간
  - ⑤ 참가하는 대회 일정(일시, 경기장 이름 및 주소)
  - ⑥ 여행 일정(비행 일정 및 여행 국가 포함)
    - ※ 24시간 이상 이동하여 특정60분 단위시간이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
  - ⑦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예: 정확한 건물/방 위치 설명, 아파트 정문 출입 비밀번호 등)
    - ※ 선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증상/확진자인 경우나 격리 중인 경우 관련 상세정보 기입
- 선수는 항상 최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특정 장소 및 시간에 없을 경우, 반드시 그 특정시간 이전에 새로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소재지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RTP 선수는 KADA로부터 RTP 제외 통지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하여 KADA에 서면통지(본 안내사항 '8. 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참조) 하기 전까지, KADA RTP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RTP 선수는 위원회의 'RTP 포함통지' 및 본 안내사항을 수령한 후, RTP에 포함된 사실과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사항 및 관련 결과조치 등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다는 '수령확인증(별첨)'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여 위원회에 이메일([rtp@kada.or.kr](mailto:rtp@kada.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소재지정보 제출 방법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웹 기반 소재지정보 관리시스템인 **ADAMS**(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Athlete Central)으로 소재지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ADAMS 웹사이트 주소: <http://adams.wada-ama.org/adams/>
    - ※ [iOS 앱스토어\(App Store\)](#)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소재지정보 제출 애플리케이션 "**Athlete Central**" 무료 다운가능
    - ※ ADAMS 최초 사용자는 PC 웹 사이트에서 최초 로그인 후 Athlete Central 앱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ADAMS에 소재지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첨부된 '**ADAMS 소재지정보 입력방법**' 또는 KADA 누리집 (<http://www.kada.or.kr>)의 '**Home - 소재지정보 - 소재지정보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ADAMS 사용자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선수는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정보 제출 관련 문의: 도핑검사부(02-2045-9873/9875, [rtp@kada.or.kr](mailto:rtp@kada.or.kr))

## 3. 소재지정보 제출 마감기한

분기	제출 마감기한
1분기: 1. 1. ~ 3. 31.	1분기: 12. 15.
<b>2분기: 4. 1. ~ 6. 30.</b>	<b>2분기: 3. 15.</b>
3분기: 7. 1. ~ 9. 30.	3분기: 6. 15.
4분기: 10. 1. ~ 12. 31.	4분기: 9. 15.

## 4. 개인정보 보호

- KADA는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정보 및 개인정보를 언제나 기밀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정보 및 개인정보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선수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와 공유될 수 있고, 도핑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ISPPPI)」에 따라 더 이상 도핑관리의 목적과 관련이 없어진 경우 폐기됩니다.

## 5.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

- RTP 선수는 제출한 소재지정보에 명시한 **특정 60분 단위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정 60분 단위시간은 도핑검사관이 접근 가능하며 선수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 도핑검사관은 특정60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선수를 찾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며, 사전 미통지 원칙을 준수하여 선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핑검사관은 특정 60분이 종료되기 5분 전, 마지막으로 선수가 해당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수에게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선수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도핑검사관이 특정 60분 단위시간 및 장소에서 선수를 찾지 못한 경우, 선수는 **'제출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회피 또는 도핑관리과정 중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되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RTP 선수는 도핑검사를 받는 경우 특정 60분이 초과하여도 도핑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핑검사관과 대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거부 또는 실패로 간주되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수는 KAD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선수가 소재지정보에 제출한 **특정 60분 이외의 시간 및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예: 국제경기연맹)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비준수에 대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기 시작 전까지 요구되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여 도핑검사관이 검사를 위해 소재지정보의 장소에 방문하였을 때 선수를 찾지 못한 경우,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제출불이행(Filing Failure)"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소재지정보에 지정한 특정 60분 단위시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검사불이행(Missed Test)"에 해당합니다.  
**※ 선수가 특정 60분 단위시간 이후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시료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60분 내에 해당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선수에게 "검사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12개월의 기간 동안 3회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며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7. 개인 책임

- RTP 선수는 제3자(지도자, 에이전트, 매니저, 부모, 국내경기단체 등)에게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조치에 대한 **책임과** 제출된 소재지정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습니다.

## 8. 은퇴한 선수의 경기 복귀

- KADA RTP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를 희망하는 선수는 은퇴 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KADA에 이메일 ([rtp@kada.or.kr](mailto:rtp@kada.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KADA가 은퇴확인서를 수령하면 해당 선수는 KADA RTP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KADA RTP 선수가 은퇴한 후 경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선수는 복귀 6개월 전까지 '은퇴 후 복귀 통지서'를 작성하여 KADA에 이메일로([rtp@kada.or.kr](mailto:rtp@kada.or.kr)) 제출해야 하고,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명시된 '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규정(2021.1.1. 시행) 제 34 조(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하고자 하는 선수는 은퇴 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등록된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 선수가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수는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선수의 국제경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 11 장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분항을 위반하여 획득한 경기 결과는 실효된다. 다만,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9.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치료목적사용면책)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KADA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 및 신청서는 검토를 통해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선수에게 안내됩니다.
  - KADA 누리집 TUE 신청 페이지: [https://kada-ad.or.kr/kada?where=tue/tue\\_application](https://kada-ad.or.kr/kada?where=tue/tue_application)
    - ※ KADA에서 승인한 TUE는 국내수준에서만 유효하며, 국제수준의 대회에서의 승인 여부는 선수가 해당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회 참가를 위한 TUE 신청은 주관단체에 따라 제출처가 다르니 대회 주관단체를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KADA는 매년 개정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지약물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복용 전 금지약물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ADA 누리집 금지약물검색서비스: [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
- 관련 문의: 02-2045-9864

## 10. 도핑방지교육

- KADA는 온라인을 통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도핑방지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포함한 도핑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주제별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지정보 제출 관련 강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DA 온라인교육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ADA 온라인교육센터: <https://edu.kada-ad.or.kr/web2/index.php>
  - RTP 선수 관련 강의('일반교육' → '주제별 교육')
    - 'ADAMS 소재지정보 입력 시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 '소재지정보 제출 관련'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관련', '금지약물 관련' 등



## 11. 도핑 제보

-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정보를 알고 있다면 KADA에 제보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투여 또는 투여시도를 한 선수를 알고 있는 경우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투여 또는 투여시도를 목격한 경우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구매 또는 소지 및 거래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선수에게 권유하는 선수지원요원(지도자, 매니저, 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알고 있는 경우
  -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기타 의심스러운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 제보 방법
  - KADA 누리집([https://kada-ad.or.kr/kada?where=anti/anti\\_jebo](https://kada-ad.or.kr/kada?where=anti/anti_jebo))
  - 이메일([reportdoping@kada-ad.or.kr](mailto:reportdoping@kada-ad.or.kr)) 또는 전화(02-2045-9885)